

## 정 관

改定 (1998.09.01, 대학81422-1150)  
改定 (1999.04.13, 전문81423-259)  
改定 (2000.02.10, 대재81422-207)  
改定 (2000.09.28, 대재81422-1506)  
改定 (2001.03.22, 대재81422-374)  
改定 (2002.08.17, 대재81422-1064)  
改定 (2002.08.24, 대재81422-1089)  
改定 (2004.02.25, 사학정책과-851)  
改定 (2004.08.13, 사학지원과-3086)  
改定 (2005.07.12, 사학지원과-4726)  
改定 (2007.01.15, 사립대학지원과-253)  
改定 (2007.06.07, 사립대학지원과-2553)  
改定 (2008.01.23, 사립대학지원과-422)  
改定 (2008.05.29, 법인사무국-65)  
改定 (2009.02.28, 법인사무국-7)  
改定 (2012.03.01, 사립대학제도과-1478)  
改定 (2013.11.28)  
改定 (2013.12.20)  
改定 (2016.04.12)  
改定 (2016.12.09)  
改定 (2017.12.12)  
改定 (2018.02.2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1, 2000.2.10, 2013.11.28)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경영한다. (개정 2000.2.10)

1. 제주국제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개정 2012.3.1)
2. 제주국제대학교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개정 2012.3.1, 2017.12.12)
3. 제주국제대학교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개정 2013.3.1, 2017.12.12)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제주도 516로 2870번지(영평동)에 둔다.

(개정 2000.9.28, 2001.3.22, 2013.11.28)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13.11.28, 2017.12.12)

## 제 2 장 자산과 회계

###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8. 1. 23)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은 유치원장이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집행한다. (개정 2017.12.12)

**제10조(예산외의 채무 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 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

본 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 까지로 한다.(개정 2013.11.28)

### 제 3 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삭제)

**제13조 ~ 제17조** <삭 제> (2007.01.15)

## 제 3 장 기 관

### 제 1 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7.01.15)

1. 이사 8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② 제1항의 이사중 2명은 개방이사로 한다. (신설 2007.01.15)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개정 2017.12.12)
2. 감사 2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7.01.15)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15)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5.7.12)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

②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08.1.23)

③ <삭 제>(개정 2008.1.23)

**제20조의3(개방이사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제주국제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개정 2008.1.23, 2013.11.28, 2017.12.12)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1.23)

1. 제주국제대학교 대학평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 4인(개정 2013.11.28)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개정 2013.11.28)
3. <삭 제>(2013.11.28)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08.1.23)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08. 1. 23)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1.15)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01.15)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7.01.15)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

⑥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신설 2007.01.15)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01.15)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개정2005.7.12)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1.23)

**제22조의2(상임이사)**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동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신설2002.8.17) (개정 2017.12.12)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그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또는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6.04.12)
6. 법인의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개최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개정 2007.01.15)

② 이사회는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01.15)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

는 사항

**제30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01.15), (개정 2008.1.23)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8.01.23)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01.15)

##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과수원 사업(밀감원)

2. 부동산 임대사업 (신설 2016.12.09)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삭 제>(개정 2016.12.09)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삭 제>(개정 2016.12.09)

**제35조(관리인)** ①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 제 5 장 해 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1.28, 2017.12.12)

**제37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 2013.11.28)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1.28)

## 제 6 장 교 직 원

### 제 1 절 교 원

#### 제 1 관 임 명

**제39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유치원장은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01.15, 2013.11.28, 2016.04.12, 2017.12.12)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 한다. (개정 1999.4.13, 2016.04.12, 2017.12.12)

1. 근무기간 (신설 2017.12.12)

가.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나 교수 직급으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7.12.12)

나. 부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7.12.12, 2018.02.21)

다. 조 교 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13.11.28, 2017.12.12, 2018.02.21)

2. 급 여 :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신설 2017.12.12)

3. 근무조건 : 강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2)

4. 업적 및 성과 : 연구, 교육, 봉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2)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2)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12.12)

③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처장·대학원장·학장 보직은 학교의 장이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

하며 그 외의 보직은 학교의 장이 보한다.(개정 2009.02.28, 2013.11.28, 2017.12.12)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 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

⑤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를 위하여 당해 학교에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1999.4.13)

⑥ 대학교육기관의장은 제2항의 교원을 겸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01.15)(개정 2009.02.28)

⑦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7.01.15)

⑧ 유치원의 교원은 유치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신설 2017.12.12)

#### 제39조의2 <삭 제> (2007.01.15)

제39조의3(교원의 계약제 임용) 이 정관 제39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원의 임용은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3.11.28)

##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4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15, 2016.04.1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사·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 된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08.01.23, 2013.11.28)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16.04.12)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신설 2007.01.15)
10. 배우자의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신설 2007.01.15)
1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정무직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부설기관의 장에 한시적으로 임명된 때 (신설 2007.01.15) (개정 2013.11.28)
12. 학과의 학생 충원율이 현저히 미달하는 학과의 교원, 학과구조조정으로 폐과 또는 통합되는 학과의 교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요청할 때 (신설 2018.02.21)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학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7.01.15, 2016.04.12)
2. 제40조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7.01.15)
3. 제40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7.01.15)
4. 제40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01.15)
5. 제40조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01.15)
6. 제40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07.01.15, 2016.04.12)
- 6의2. 제40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6.04.12)
7. 제4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7.01.15)
8. 제40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01.15)
9. 제40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01.15)
10. 제40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해당사유에 따른다. (신설 2007.01.15.) (개정 2017.12.12)
11. 제40조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02.21)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 제40조 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2.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04.12)

**제44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함)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04.12)

**제44조의2(직위해제교원의 처우)** 직위해제된 교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신설 2016.04.12)

1.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0퍼센트 지급한다.
2. 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70퍼

센트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44조의 3(면직의 사유)** (신설 2017.12.12)

① 사립학교법 제58조에 의하여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17.12.12)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신설 2017.12.12)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신설 2017.12.12)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신설 2017.12.12)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신설 2017.12.12)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신설 2017.12.12)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6조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7.12.12)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의 따라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학생 충원율이 현저히 미달하거나, 또는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18.02.21)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개정 2017.12.12)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4.12) (개정 2017.12.12)

**제47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8.24)

**제47조의2(명예퇴직)** ①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되, 해당 규정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7.12.12, 2018.02.21)

**제47조의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8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대학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01.15, 2016.04.12, 2017.12.12)

**제4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28, 2016.04.12)

2. <삭제> (삭제 2017.12.12)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0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제51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업무 담당처장 또는 교무처장이 된다.

(개정 1999.4.13, 1999.4.13, 2000.2.10, 2004.8.13, 2013.11.28, 2017.12.12)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4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5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 2 절 교원 징계위원회

**제56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외부위원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최소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12.09)

**제57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 한다.

③ 교원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제척사유)** 교원 징계위원회는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9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이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9조의3(징계의결요구 사유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

**제60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진상을 조사 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 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04.12)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2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

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사립 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 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4.12)

**제63조(교원 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4조(운영세칙)** 교원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 3 절 재 심 위 원 회

제65조 내지 제78조 <삭 제>

### 제 4 절 사 무 직 원

제79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 “직원” 이라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04.12)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6.04.12)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과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자
- ②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 (자격증, 면허증)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③ 재직 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7.12.12)

**제80조(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04.12, 2017.12.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직원은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12.12)

**제81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7.12.12)

**제82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제83조(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7.12.12)

**제84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2)

**제85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직원의 징계는 대학의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12, 2018.02.21)

② 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 제 7 장 직 제

### 제 1 절 법 인

**제86조(법인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3.11.28)

② 법인 사무국에는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3.11.28, 2017.12.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 2 절 제주국제대학교(개정 2013.11.28)

**제87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부총장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13.11.28)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7.12.12)

**제88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무처·기획처·학생처·사무처를 두며,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8.9.1, 2000.9.28, 2007.01.15, 2008.5.29, 2013.11.28, 2016.04.12, 2017.12.12, 2018.02.21 )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8.9.1, 2000.9.28, 2008.5.29, 2013.11.28, 2016.04.12, 개정 2017.12.12)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을 정한다. (개정 1998.9.1)

④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은 제주국제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른다.(신설 2013.11.28)

**제88조의2(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신설 2004.2.25)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 1인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5급 이상인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04.2.25)(개정 2013.11.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4.2.25)

**제89조(부속시설)** ① 대학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인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3.11.28, 개정 2017.12.12)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0조(도서관)** <삭 제> (1998.9.1)

### 제 3 절 <삭 제>(2013.11.28)

**제91조 내지 제94조** <삭 제>(2013.11.28)

### 제 4 절 제주국제대학교유치원 및 어린이집(개정 2013.11.28, 개정 2017.12.12)

**제95조(원장 등)** ①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1인을 두며, 어린이집에 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00.2.10, 2013.11.28)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유치원을 대표한다. (개정 2017.12.12)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여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유고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12)

④ 유치원에 서무과 교무과를 두며,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1999.4.13, 2013.11.28, 2017.12.12)

⑤ 어린이집에 서무과를 두며,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2000.2.10)(개정 2013.11.28, 2017.12.12)

## 제 5 절 정 원

제96조(정원) 법인 및 각 급 학교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별표2·별표3·별표4와 같다. (개정 2017.12.12)

## 제 8 장 대학평의위원회 (신설 2007.01.15)(개정 2008.01.23)

제97조(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8조(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6명

2. 직원 2명

3. 학생 2명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②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9조(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제100조(평의위원회 의장 등) ① 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01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8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2조(평의위원회의 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8.01.23)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8.01.23)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01.23)

**제103조(운영규정)** 평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 9 장 보 칙

**제104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제주도의 주요 일간지에 공고한다.(개정 2013.11.28)

**제10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6조(설립당초의 임원)**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의 설립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김 무 근	*****	'67.3.31 - '69.9.30	*****
이 사	강 석 범	*****	'67.3.31 - '72.3.30	*****
이 사	한 재 춘	*****	'67.3.31 - '69.9.30	*****
이 사	이 봉 춘	*****	'67.3.31 - '69.9.30	*****
이 사	강 정 민	*****	'69.3.31 - '72.3.30	*****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산업정보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산업정보대학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없이 임명된 전문대학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산업정보대학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설립 당시의 임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탐라대학교 설립당시의 임원은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 사 장	박 옥 기	*****	*****
이 사	김 동 권	*****	*****
이 사	이 원 기	*****	*****
이 사	김 장 욱	*****	*****
이 사	김 해 수	*****	*****
이 사	문 신 자	*****	*****
이 사	윤 경 희	*****	*****
이 사	이 상 화	*****	*****

이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근무 중인 교원중 교수의 임용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정관 당시 “동원산업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탐라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정관 당시 “제주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제주산업정보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 정관에 의하여 제주산업정보대학에 보직중인 과장은 이 정관 시행 시에 처장으로 임명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보호 및 학사관리에 대하여는 제주국제대학교 학칙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4조(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직전일에 탐라대학교 및 제주산업정보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제주국제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개교 당시의 임원) 제주국제대학교 개교당시의 임원은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사장	강부전	1942.04.19	*****
이 사	고점유	1944.01.26	*****
이 사	김수진	1973.04.14	*****
이 사	문성윤	1962.09.21	*****
이 사	류장수	1961.09.21	*****
이 사	이동한	1951.06.24	*****
이 사	하연섭	1963.04.29	*****
이 사	허응수	1941.10.20	*****

이다.

**제3조(제주국제대학교 설립 인가에 따른 적용례)** 이 정관 개정부분 제1조, 제20조의3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39조제2항제5호, 제39조제3항, 제39조의3, 제51조제1항, 제62조의2, 제86조제1항·제2항, 제2절,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제3절,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4절, 제95조제1항·제5항, 제96조, 부칙 제2조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제39조제2항제3호의 조교수로 임용된 자는 임용기간을 이 정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년 7월 20일 이전에 조교수로 임용된 자는 이 정관 종전 규정을 따르며, 종전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자는 조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1항 제4호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0.9.28, 2013.12.20, 2017.12.12)

법인 직원 정원

총 계	9명
-----	----

(별표 2) (개정1998.9.1, 개정2000.9.28, 2013.12.20, 2017.12.12)

제주국제대학교 직원 정원

총 계	49명
-----	-----

(별표 3) (개정2000.9.28) <삭 제> (2013.12.20)

(별표 4) (개정 2013.12.20, 2017.12.12)

제주국제대학교유치원 직원 정원

총 계	14명
-----	-----

(별표 5) (개정 2013.12.20, 2017.12.12)

제주국제대학교어린이집 직원 정원

총 계	12명
-----	-----